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장회사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81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 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전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업개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1주 내에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및 찬반 의결권 수 등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 및 안 제542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생략) ③ <u>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u>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u> 2. <u>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u>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u>사업보고서</u>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u>감사보고서</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542조의14(총회의 결과 공고) ① 상장회사는 총회가 끝난 날 부터 1주 내에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각 안건별 행사 의결권 수 및 찬반 의결 권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식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 상장회사¹⁾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제542조의4제3항 본문²⁾).
-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상법 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 시 알려야 할 사항으로 ① 사외이사,

1)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거래소)가 증권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을 말함(「상법 시행령」 제29조).

2)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최대주주 등과의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의 내역,
③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³⁾에 따른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함)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⁴⁾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함)를 규정하고 있음(제31조
제4항⁵⁾).

-
- 3)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
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
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
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5)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④ 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
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3.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
성한 참고서류

□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는 안건별 찬반 의결권 수 등 총회의 결과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사업보고서 등 주요서류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주총회의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될 의제 또는 의안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주주총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주들의 실효적 의사결정에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령에 따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주주총회 개최 1주 전)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기한(주주총회일의 2주 전)보다 늦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촉박하고⁶⁾,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운영 및 주주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황현영, 최근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 법제 통권 제 694호(2021년 9월), p.161

부족과 참여 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 시 함께 통지 또는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서는 현행법령과 달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 등으로 개별통지 또는 공고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장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감사품질 하락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상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⁷⁾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별통지 또는 공고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음.

7)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⑤ 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갖추어 두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거래소

- 「상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개요 등에 대한 예외를 삭제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에 비하여 모든 주주에게 문서로 사업보고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면 상장회사의 업무 부담은 과중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⁸⁾⁹⁾
- 한편,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 후단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 후단에 따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예외의 경우 해당 규정의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영계에서 부실 감사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8) 1997. 1. 13. 「증권거래법」*에 관련 조문이 신설될 때부터 상장회사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개별통지 또는 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인정되어 왔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이 법 폐지에 따라 「상법」 회사편에 포함됨.

「증권거래법」(법률 제5254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191조의10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②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공고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법률 제6423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191조의10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91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9) 한국상사법학회는 회사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상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 삭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반영한 내용이라는 점¹⁰⁾에서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인의 감사기간이 단축되어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¹¹⁾

-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¹²⁾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 후단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없이 「상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실상 앞당기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되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¹³⁾¹⁴⁾

10) 2020. 1. 16.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p.2

11) 제20대국회에 발의되었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기총회 2주일 전으로 정하려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642호)에 대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주주 권리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감사보고서 적시 제공을 통해 주주의 재무제표 검토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일 집중으로 1~3월 사이 감사인의 업무강도가 과중한 상황에서 감사기간이 더욱 단축될 경우 감사보고서의 품질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정무위원회 검토보고, 2017년 3월, p.8).

12)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개정안에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시” 사업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42조의4제1항¹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일간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형태의 주주총회 소집통지¹⁶⁾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제적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

- 13)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 후단에 따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예외가 삭제됨에 따라 「상법」 관련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상법」 제542조의12제6항에서는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와 개정안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통지·공고 시기가 불일치함.
- 14)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예외 없이 총회일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강제할 경우 주주총회 일정 집중화에 따른 감사업무의 특정시기 집중으로 인하여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있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의 총회 준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1주 전 게재 등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 15)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함(「상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16)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